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1.8.13.) 결과 반영하여 일부 수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2. 법 제15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 입학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간호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5) 강원권	강원도	15%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다.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 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입학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1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전체인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인원}}{\text{모집단위별 입학전체인원}}$

나. 제2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 전체인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입학전체인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한다</u> .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u><신 설></u>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 수도권 <u>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u> 2. 법 제15조제2항제2호: 해당 <u>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u>

<신 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 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926